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업 미개시 등으로 허가 취소시 ‘정당한 사유’ 고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21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부
2. 발 의 일 : 2024. 10. 16.
3. 회 부 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영업 미개시 등으로 허가 취소시 ‘정당한 사유’ 고려

- 현행법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휴업)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1. <u>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u>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u>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u> -----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조제1항1)에 따라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을 갖추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5조제1항2)에서는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행법 제4조제4호3)에 따라 3년간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허가의 취소사유 중에는 제조·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 휴업),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무분별한 허가의 남용을 방지하여 영업의 적법성과 지속

-
-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성을 보장하고 허가의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하며, 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유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나, 제조·판매업자의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 휴업의 사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1년 이라는 시간적 조건만 규정하고 있어 취소사유가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조·판매업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조·판매업자의 영업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적·외부적 요인(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제조·판매업 허가의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해주고 경제 활동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여짐.

□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의 미개시 또는 1년 이상의 계속적인 휴업시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다수의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취소사유시 ‘정당한 사유’ 반영 유사입법례]

구분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하수도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 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낙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후 <u>정당한 사유 없이</u>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u>정당한 사유 없이</u>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취소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 경우로, 영업의

‘미개시’ 및 영업의 ‘휴업’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유사입법례에서는 영업의 휴업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점과 ‘영업의 휴업시’가 ‘영업의 미개시’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의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두 상황 간의 차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⁴⁾.

[영업 미개시·영업 휴업시 ‘정당한 사유’ 적용 유사입법례]

구분	영업 미개시	영업 휴업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X	○
하수도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X	○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X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X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X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X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취소 등)	○	○

4) 국방부는 ‘영업의 개시’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은 다른 유사입법례와 동일하게 취소시 고려사항으로 ‘정당한 사유’만을 표현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정당한 사유’ 위임규정 입법례]

구분	내용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u>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u>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u>

5) ‘정당한 사유 없이’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수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정당한 사유(전쟁, 전염병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정당한 이유</u> 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u>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308